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096

발의연월일: 2021. 11. 3.

발 의 자:김경만·고영인·고용진

김성주 · 김수흥 · 김승원

김영주 · 김정호 · 김진표

김태년 · 김홍걸 · 서영석

신정훈 · 우상호 · 윤관석

윤준병 · 임종성 · 홍기원

홍성국 의원(19인)

제안이유

최근 원유, 철광석,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,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.4%나 상승했음에도,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.2%에 불과함.

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'하도급대금 조정제도'를 두고 있으나,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,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.

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

가격 및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,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- 나.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,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9항 신설).
- 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제16조의2제1항에"를 "제16조의2제1항 및 제9항에"로, "절차 등"을 "절차, 서면발급 당시 원자재 기준가격(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 우에 한한다) 등"으로 한다.

제16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3조제2항의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 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 우,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 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"를 "제16조의2제7항 및 제9항, 제17조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존) ① (생 략) 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 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 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 -----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 및 제9항에----------절차, 서면 건,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 발급 당시 원자재 기준가격(하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 [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 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 다) 등----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또는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. ③ ~ ⑨ (생 략)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6조의2(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제16조의2(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①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~ ⑧ (생 략)

<신 설>

제25조(시정조치) ① 공정거래위 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9항, 제3조의4, 제4 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16조의 기가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특약의 삭제나 수정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・③ (생 략)

	⑨ 제3조제2항의 서면으로 정
	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
	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
	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
	상승하는 경우, 원사업자는 원
	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
	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
	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4]	25조(시정조치) ①
	<u>제1</u>
	6조의2제7항 및 제9항, 제17조
	<u>부터</u>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